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-1-1. 이 지침은 경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,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. 제2절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-2-2. <u>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,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, 지방재정의 고려,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.</u> 1-2-5.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부합되어야 하며,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(법 제8조 3항) 1-2-6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(법 제12조) 제3절 법적 근거 1-3-1. 본 수립지침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근거한다. <u>법 제8조(경관계획의 내용)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.</u> <u>영 제4조(경관계획의 수립기준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8조제2항에서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이란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수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, 산림청장을 말한다.</u>	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-1-1. 이 지침은 경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5항 및 경관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,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. 제2절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-2-2. <u>경관계획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·군에서는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, 지방재정의 고려,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.</u> 1-2-5.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부합되어야 하며,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(법 제9조제4항) 1-2-6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(법 제14조제2항) 제3절 법적 근거 1-3-1. 본 수립지침은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3조에 근거한다. <u>법 제9조(경관계획의 내용)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 <u>영 제3조(경관계획의 수립기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.</u>

제4절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
1-4-1. 경관계획 수립대상지역 : 특별시·광역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(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, 이하 같다)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-4-2.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, 이하 같다)가 수립한다.

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

1-5-1.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, 계획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(1) 기본경관계획 :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, 경관 권역, 축,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, 경관을 보전,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

1-5-2. 경관계획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수립할 수 있다.

1-5-3. 1-5-1에 따른 기본경관계획은 계획 수립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.

(1) 도 기본경관계획 :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, 주요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 등을 설정하며, 경관을 보전,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

(2) 시·군 기본경관계획 : 시(특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)·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,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

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

제1절 경관계획의 내용

2-1-1. 경관계획에는 법 제8조(경관계

제4절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
1-4-1. 경관계획 수립대상지역 : 특별시·광역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또는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·군의 시장·군수(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.)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-4-2.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, 이하 같다)가 수립한다.

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

1-5-1.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, 계획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(1) 경관계획 :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, 경관 권역, 축,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, 경관을 보전,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

1-5-2.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수립할 수 있다.

1-5-3. 1-5-1에 따른 경관계획은 계획 수립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.

(1) 도 경관계획 :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, 주요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 등을 설정하며, 경관을 보전,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

(2) 시·군 경관계획 : 시(특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)·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,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

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

제1절 경관계획의 내용

2-1-1. 경관계획에는 법 제9조(경관계

획의 내용)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(1) ~ (2) (생략)

(3)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

- ① 경관계획의 목표, 기본방향 설정,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방안 수립 등
- ② 경관 기본구상
- ③ 경관권역·축·거점 등 경관구조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

(신설)

(4) 경관지구,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(용도지구의 지정)에 따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설정 및 신설 제안

- ② 이미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의 제시

(5)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

- ①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,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② 경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계획, 지역·지구·구역 및 경관 관련 사업, 협정, 협약, 그 밖에 경관 관련 심의 및 계획기준 등의 적용사항 도출 및 연계 추진방안의 제시

(6)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

- ① 경관사업, 경관협정 및 기타 경관관리 등 경관계획의 수립내용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요소별 예산의 산정, 재정확보 및 추진방법 등

(7)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

- ①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·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(이하 '경관중점관리구역'이라 한다.) 등에 관한 사항

-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2-2-3. 총체적 계획 : 경관계획은 경관

획의 내용)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(1) ~ (2) (현행과 같음)

(3)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

- ① 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

- ② 경관축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

- ③ 경관거점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

(4)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

(5) 경관지구,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(용도지구의 지정)에 따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설정

- ② 이미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의 제시

(6)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
- ⑦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⑧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

- ⑨ 자연 경관,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, 가로(街路),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

- ⑩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

- ⑪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2-2-3. 총체적 계획 : 경관계획은 경관

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, 자연환경관리, 역사문화 보존,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수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해양부, 산림청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, 실행수단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.

제3장 경관계획의 수립절차

제1절 경관계획의 입안

3-2-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.

제4장 도 기본경관계획

제1절 기본경관계획의 개요

4-1-2. 범위 및 내용

- 1)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,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공간적, 내용적, 시간적 범위를 제시한다.
- ① 공간적 범위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내용적 범위는 관할구역의 경관계획방향 등을 대상으로 한다.
- ③ 시간적 범위는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, 종료되는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절 경관기본계획

4-4-1. 경관기본계획의 내용

- (1) ~ (2) (생략)
- (3)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방향을 제시한다.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, 중첩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.

4-4-5.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

- (1)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명칭·위치·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, 구역 내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.
- (2)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·지구·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수립, 경관조례 관리,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·제시한다.

제6절 실행계획

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, 자연환경관리, 역사문화 보존,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안전행정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산림청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, 실행수단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.

제3장 경관계획의 수립절차

제1절 경관계획의 입안

3-2-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.

제4장 도 경관계획

제1절 경관계획의 개요

4-1-2. 범위 및 내용

- 1)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,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공간적, 내용적, 시간적 범위를 제시한다.
- ① 공간적 범위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내용적 범위는 관할구역의 경관계획방향 등을 대상으로 한다.
- ③ 시간적 범위는 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, 종료되는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절 경관기본계획

4-4-1. 경관기본계획의 내용

- (1) ~ (2) (현행과 같음)
- (3)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방향을 제시한다.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, 중첩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.

4-4-5.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

- (1)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명칭·위치·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, 구역 내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.
- (2)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·지구·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수립, 경관조례 관리,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·제시한다.

제6절 실행계획

4-6-1. 도 기본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은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.

제5장 시·군 기본경관계획
제1절 기본경관계획의 개요

5-1-2. 범위 및 내용

(1) (생략)

① (생략)

② 내용적 범위는 관할구역의 경관계획방향 및 실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시간적 범위는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완성,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대상으로 한다.

(2) 경관계획의 개요,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, 경관기본구상, 경관기본계획,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, 경관가이드라인,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.

제2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

5-2-1. 경관자원조사

(3) 조사방법

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경관자원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-경관기본계획-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-경관가이드라인-실행계획 등과 연계하고,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,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활용한다.

⑤ 시·군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하고,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, 실행계획 등에서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·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.

5-2-3. 경관의식조사

(3) 경관요소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, 관할구역의 경관기본계획,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, 경관가이드라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.

제4절 경관기본계획

5-4-1. 경관기본계획의 개요

(1) 경관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에 대해 경관의 보전,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.

(3) 관할구역의 경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, 경관관리의 목표 및 보전·관리·형성을

4-6-1. 도 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은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.

제5장 시·군 경관계획
제1절 경관계획의 개요

5-1-2. 범위 및 내용

(1) (현행과 같음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내용적 범위는 관할구역의 경관계획방향 및 실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시간적 범위는 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완성,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대상으로 한다.

(2) 경관계획의 개요,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, 경관기본구상, 경관기본계획,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, 경관가이드라인,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.

제2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

5-2-1. 경관자원조사

(3) 조사방법

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경관자원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-경관기본계획-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-경관가이드라인-실행계획 등과 연계하고, 관할구역 경관의 보전,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활용한다.

⑤ 시·군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경관위해요소를 설정하고,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, 실행계획 등에서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·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.

5-2-3. 경관의식조사

(3) 경관요소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, 관할구역의 경관기본계획,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, 경관가이드라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.

제4절 경관기본계획

5-4-1. 경관기본계획의 개요

(1) 경관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해 경관의 보전,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.

(3) 관할구역의 경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, 경관관리의 목표 및 보전·관리·형성을

위한 실행수단 등을 검토·제시한다.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,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.

5-4-5.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

- (1)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명칭·위치·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, 구역 내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.
- (2)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·지구·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수립,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·제시한다.

제5절 경관가이드라인

5-5-1. 경관가이드라인의 개요

- (1)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경관지구·미관지구 및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실행을 위해 해당 구역별로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, 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,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.

5-5-4.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

5-5-4-1. 작성방향

- (1) 경관중점관리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의 보전,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소중심의 구체적인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.
- (3) 경관중점관리계획의 내용은 향후 경관조례,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심의, 지구단위계획 등의 실행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
5-5-4-3. 작성방법

- (1) (생략)
- (2) 공간 및 계획의 위계를 고려하여,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지침과 특정 장소·대상에 적용되는 상세지침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제6절 실행계획

- 5-6-1. 시·군 기본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은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.

제6장 특정경관계획

제1절 특정경관계획의 개요

6-1-2. 특정경관계획의 범위

- (1)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 내의 일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. 다

위한 실행수단 등을 검토·제시한다.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,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.

5-4-5.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

- (1)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명칭·위치·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, 구역 내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.
- (2)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·지구·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수립,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·제시한다.

제5절 경관가이드라인

5-5-1. 경관가이드라인의 개요

- (1)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경관지구·미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실행을 위해 해당 구역별로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, 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,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.

5-5-4.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

5-5-4-1. 작성방향

- (1)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의 보전,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소중심의 구체적인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.
- (3) 경관중점관리계획의 내용은 향후 경관조례,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심의, 지구단위계획 등의 실행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
5-5-4-3. 작성방법

- (1) (현행과 같음)
- (2) 공간 및 계획의 위계를 고려하여,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지침과 특정 장소·대상에 적용되는 상세지침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제6절 실행계획

- 5-6-1. 시·군 경관계획의 실행계획은 제7장의 내용에 따른다.

제6장 특정경관계획

제1절 특정경관계획의 개요

6-1-2. 특정경관계획의 범위

- (1)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 내의 일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. 다

만,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.

(2) 내용적으로는 특정 지역, 특정 경관유형, 특정 경관요소를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

6-2-1. 유형별 경관자원조사

(1) 특정지역 또는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조사로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, 규모,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포함한다.

6-2-4. 경관구조분석

(1) 지형지세 및 중요 구조물에 의해 형성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경관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인 경관 및 공간구조분석을 시행한다.

6-2-5. 경관의식조사

(1)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경관적 특성이나 특정 경관유형 또는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주민이나 방문자들의 경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, 인터뷰 등의 조사를 한다.

제4절 특정경관계획의 수립

6-4-1. 특정경관계획의 내용

(1) 특정경관계획은 특정한 지역, 특정한 경관유형 및 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심의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실행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.

제3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

7-3-2. 경관지구·미관지구·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경관조례에 반영할 규제사항, 지방자치단체의 유도·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.

제4절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

7-4-1.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·군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한다.

(2)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·구체화하고,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,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경관중점관리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을

만,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.

(2) 내용적으로는 ~~특정 지역~~, 특정 경관유형, 특정 경관요소를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

6-2-1. 유형별 경관자원조사

(1) ~~특정지역 또는~~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조사로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, 규모,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포함한다.

6-2-4. 경관구조분석

(1) 지형지세 및 중요 구조물에 의해 형성되는 ~~특정 지역이나~~ 특정경관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인 경관 및 공간구조분석을 시행한다.

6-2-5. 경관의식조사

(1) ~~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경관적 특성이나~~ 특정 경관유형 또는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주민이나 방문자들의 경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, 인터뷰 등의 조사를 한다.

제4절 특정경관계획의 수립

6-4-1. 특정경관계획의 내용

(1) 특정경관계획은 ~~특정한 지역~~, 특정한 경관유형 및 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심의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실행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.

제3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

7-3-2. 경관지구·미관지구·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경관조례에 반영할 규제사항, 지방자치단체의 유도·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.

제4절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

7-4-1.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·군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한다.

(2)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·구체화하고,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,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을

설정하고,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할 사항을 제시한다.

제5절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7-5-1. 경관사업은 관할구역 내 경관을 보전,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,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,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·활용, 경관위해요소의 정비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경관사업을 제시한다.

7-5-3. 경관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되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.

제8장 도서의 작성

제2절 도면의 작성수준

8-2-2. 경관계획도

(2)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경관중점관리구역,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,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.

(4) 경관시뮬레이션

③ 관할구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는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시뮬레이션은 시각회랑, 조망축 등의 설정 등과 같은 형태와 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. 지형, 도로 및 건물의 형태, 높이, 녹지 등에 대한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하여 사용한다.

8-2-3. 경관지침도

(2)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경관중점관리구역,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와 관련된 계획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지침도를 작성한다.

9-1. 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까지로 한다. <개정 2012.8.10>

설정하고,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할 사항을 제시한다.

제5절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7-5-1. 경관사업은 관할구역 내 경관을 보전,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,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,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·활용, 경관위해요소의 정비 등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경관사업을 제시한다.

7-5-3. 경관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되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.

제8장 도서의 작성

제2절 도면의 작성수준

8-2-2. 경관계획도

(2)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중점경관관리구역,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,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.

(4) 경관시뮬레이션

③ 관할구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는 경관계획의 경관시뮬레이션은 시각회랑, 조망축 등의 설정 등과 같은 형태와 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. 지형, 도로 및 건물의 형태, 높이, 녹지 등에 대한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하여 사용한다.

8-2-3. 경관지침도

(2) 경관권역, 경관축, 경관거점, 중점경관관리구역,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와 관련된 계획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지침도를 작성한다.

9-1. 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.